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근거 마련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7)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근거 마련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8.
3. 회 부 일 : 2026.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예산 및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개인정보 보

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 현행 법령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예방을 위하여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임.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2025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¹⁾”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2025년 개인정보 유출신고 319건 중 중소기업이 47%(149건)를 차지하였고, 민간기업에 대한 2025년 조사·처분 건수 150건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75건으로 50%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법 제29조²⁾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1) “2025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p. 9, p.31.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29조

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0조의3(2026. 3. 10. 신설, 2026. 9. 11. 시행 예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함.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대기업에 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³⁾,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술 지원⁴⁾을 위한 근거 규정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2026. 3. 10.>

[제목개정 2023. 3. 1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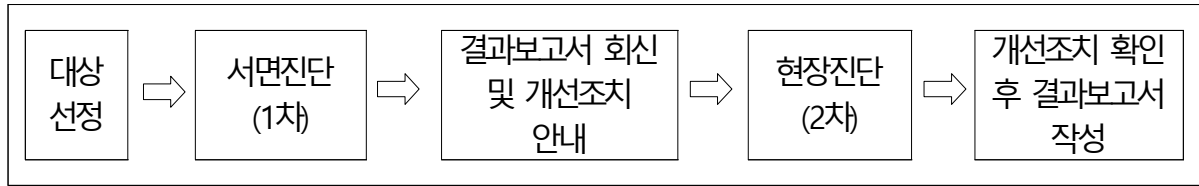
이에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및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업무를 소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중소기업 등의 보안조치와 관련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예방, 그리고 유출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 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점검·컨설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자체 보안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6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26년 예산 2억원).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절차>



*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한편, 개정안은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5)6)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2023. 9. 12., 2025. 2. 25., 2025. 9. 23.>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가역적인 피해로 이어져 지원을 통한 예방 체계 확립이 시급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예산이 부족해 지원 없이는 정보보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우며, 간접지원뿐 아니라 솔루션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임. 또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도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4.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7. 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제목개정 2022. 7. 19.]